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년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다솔 어린이집 (남수연)	삼양로2길55 (길음제2동)	사회복지법인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 (강순옥)	57/42	2020.06.01. ~ 2025.05.31.
2	길음빛 어린이집 (양희선)	길음로92 (길음제1동)	개 인 (양희선)	72/64	
3	아이누리 어린이집 (김영실)	숭인로16 (길음제2동)	개 인 (김영실)	20/20	2020.07.01. ~ 2025.06.30.
4	꿈빛 어린이집 (정혜연)	종암로21길127 (종암동)	개 인 (정혜연)	19/19	2020.09.01. ~ 2025.08.31.
5	대림 어린이집 (최은정)	길음로118 (길음제1동)	길음뉴타운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강철)	28/28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6	즐거운 어린이집 (문은순)	정릉로305 (정릉제1동)	개 인 (문은순)	20/20	
7	한사랑 어린이집 (박선자)	솔샘로25길28 (정릉제4동)	개 인 (박선자)	20/20	

1)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2) 수탁기관 선정 : 2025년 제1차,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나. 위탁 사업의 범위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